

문서번호 : 18-민생위-06-02  
수 신 : 제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제 목 : [논평] 총수 지배력 유지 도구로 악용되는 대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제도개혁을 촉구한다.  
전송일자 : 2018. 7. 2.(월)  
전송매수 : 총 3매

## [공 동 논 평]

### 총수 지배력 유지 도구로 악용되는 대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제도개혁을 촉구한다.

- 공정위의 대기업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 문제점 드러나 고유목적 사업보다 계열사 주식 보유 및 규제회피 수단 등에 악용돼
- 재벌계열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입법화 해야

1. 오늘(7/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경우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수입·지출이 30% 수준으로 전체 공익법인(64% 수준)의 절반에 불과하고, 보유 자산의 16.2%가 계열사 주식이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1.06%)하였다. 또한 공익법인을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 ▲계열사 우회지원 ▲규제 회피 수단 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의심된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 등 공익법인이 본래의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지배주주의 지배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황이 밝혀졌다. 공익법인의 주 설립목적이 장학, 연구, 의료 등의 ‘공익(公益)’ 사업이 아니라, 재벌총수일가의 계열사 지배 등의 ‘사익(私益)’ 추구에 있지 않나 하는 그 동안의 의문이 이번 공정위 조사 결과 확인된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 권력의 대표적인 적폐 중 하나로 이렇듯 재벌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재벌 공익법인들의 정비를 위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공정위와 국회가 재벌계열 공익법인들이 자신이 보유한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률을 시급히 정비할 것을 촉구한다.
2. 공익법인이 재벌총수의 사금고로 이용되어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특정 회사에 국한된 예외적 사례도 아니다. 2016. 2. 삼성SDI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신규

생성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서 삼성물산 500만 주를 매도할 때, 그 중 200만 주를 매수해준 곳이 바로 삼성생명공익재단이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공익법인을 승계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다’ 며 2015. 5. 재단 이사장직에 취임한지 불과 1년도 안되어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익재단을 악용했다. 아마도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3천억여 원을 들여 그룹 지배의 핵심 고리인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해 주고, 증여세 등 각종 세금도 면제되는 공익재단이 그야말로 전가지보(傳家之寶)와도 같았을 것이다. 이 밖에 한진그룹 정석인하학원의 대한항공 유상증자 참여, 현대차그룹의 일감몰아주기 회피 수단으로서의 현대차 정몽구재단 활용 등 재벌총수의 공익재단을 활용한 지배력 유지 사례는 다종다양하다. 더 이상 ‘기부문화 위축’ 운운하며 공익법인을 이용한 재벌총수의 편법적 방조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

3. 재벌계열 공익법인들의 계열사 주식 보유 규모 역시 실상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공정위 자료에 나타난 주식보유 가액의 평가기준이 시가가 아니라 취득원가이기 때문이다.

〈표 1〉 삼성 소속 계열 공익법인의 주식보유 규모

집단명	공익법인명	주식보유회사명	보유주식수	장부가치(백만 원)	지분율(%)	2018년6월말 주가	시가총액
삼성	삼성문화재단	삼성에스디아이(주)	400,723	9,244	0.57%	214,000	85,755
삼성	삼성문화재단	삼성생명보험(주)	9,360,000	585	4.68%	98,400	921,024
삼성	삼성문화재단	삼성물산(주)	1,144,086	1,303	0.60%	116,500	133,286
삼성	삼성문화재단	삼성증권(주)	195,992	4,478	0.22%	34,750	6,811
삼성	삼성문화재단	삼성화재해상보험(주)	1,451,241	38,195	2.87%	264,000	383,128
삼성	삼성문화재단	삼성전자(주)	37,615	11,888	0.09%	2,332,500	87,737
삼성	삼성복지재단	삼성화재해상보험(주)	170,517	3,693	0.36%	264,000	45,016
삼성	삼성복지재단	삼성에스디아이(주)	170,100	4,291	0.26%	214,000	36,401
삼성	삼성복지재단	삼성물산(주)	80,946	3,765	0.04%	116,500	9,430
삼성	삼성복지재단	삼성전자(주)	89,683	2,692	0.08%	2,332,500	209,186
삼성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생명보험(주)	4,360,000	231,080	2.18%	98,400	429,024
삼성	삼성생명공익재단	에스코어(주)	36,939	39	0.14%	-	-
삼성	삼성생명공익재단	(주)미라클아이앤씨	8,804	72	0.19%	-	-
삼성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물산(주)	2,000,000	306,367	1.05%	116,500	233,000
계				617,690			2,579,798

출처 : <2018. 7. 2. 공정위 공익법인 실태조사 분석결과> 참여연대 재가공

예를 들어 위 <표 1>에서 삼성그룹에 소속된 계열 공익법인들이 보유한 삼성 계열회사 주식규모는 장부가 기준으로 6,177억 원에 불과하지만, 시가(2018. 6. 말) 기준으로는 2조 5,798억 원에 달해 두 평가기준의 괴리가 약 2조 원에 달한다.

4.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기 위해 계열 공익법인 등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대주주일가의 지배력 강화 차단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달까지 운영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특별위원회의 법 개정 내용에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금지 관련 사안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등 제도개선에 온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과는 별개로, 이미 20대 국회에서 박영선 의원, 박용진 의원이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송영길 의원이 공익법인 출연 재산의 운용소득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비율을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이들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힘써 무너진 ‘공익’인 법인을 둔갑시켜 총수 일가의 지분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체계를 개선하고, 공익법인이 실제 설립목적에 맞게 운용되는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2018년 7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백주선